

등록번호	자치행정과-18033
등록일자	2015.10.15.
결재일자	2015.10.19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동행정팀장	자치행정과장	행정국장		
이주현	임동호	옥종식	전결 10/19 이창훈		
협조자					

2015년 4/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계획

조사기간 : 2015. 11. 2.(월) ~ 2015. 12. 18.(금) [47일간]

- 사실조사 및 최고·공고 : 11. 2.(월) ~ 12. 13.(일) (42일)
- 직권조치 : 12. 14.(월) ~ 12. 18.(금) (5일)

중점 정리사항

-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
-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·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
- 제3자(채권·채무 등 이해관계자) 요청에 의한 사실조사

2015. 10. .

강 남 구
(자 치 행 정 과)

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계획

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, 9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'15년 4/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하고자 함.

I 추진근거

-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
-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
- 2015년도 4/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계획 통보
(행정자치부 주민과-4938, 2015.10.06.)
-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계획 통보
(서울시 자치행정과-21607, 2015.10.12.)

II 추진계획

- 조사기간 : 2015. 11. 2.(월) ~ 12. 18.(금)(47일간)
- 추진내용
 -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
 - 90세 이상 고령자(1925.12.31.이전 출생자) 거주 및 생존여부
 - ※ 2015. 9.30.기준 90세 이상자 : 1,922명
 -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·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
 -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
 -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,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
 - ※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: 2015.11.2. ~ 2015.12.18.(47일간)

□ 기관별 역할

○ 구(자치행정과)

- 추진계획 수립, 동 지원 및 직원교육, 현장지도
- 홍보 철저로 민원인 혼란 최소화 및 원활한 주민 협조 유도

○ 동주민센터

- 동장 및 담당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실조사
- 추진계획 수립, 통장 지원 및 직원교육, 민원안내
 - ※ 세대명부는 분실되지 않도록 통장 및 담당공무원 교육 철저 실시
(교육일지 작성, 세대명부 분실시 즉각 匾에 보고)
- 통·담당 지정하여 민원문의 대처
- 반상회 및 통반장 등을 통한 대면 홍보 강화

Ⅲ 세부 추진계획

〈 조사절차 요약 〉

- 사전홍보를 통한 주민협조 유도 및 마찰 방지
- 사실조사용 세대명부 출력, 조사 실시
- 주민신고사항 상이자 주민등록 이전 조치 및 직권조치
- 동별 조치결과 보고

1. 사실조사 홍보 : 2015.11.2.(월) ~ 12.18.(금) (47일간)

○ 홍보 방법

- 지역언론, 반상회보, 홈페이지, 플래카드,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, 각종 게시판 공고

○ **홍보 내용**

-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자, 무단 전출자,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 협조 당부
- 무단 전출자 등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자진 이전토록 유도

2. 사실조사 및 최고·공고 : 2015.11.2. ~ 2015.12.13.(42일간)

○ **조 사 자 :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**

- ※ 필요시 통장 합동으로 조사, 세대 방문시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 제시 하여 민원 발생 예방

○ **명부 작성**

- 사실조사를 위한 스크립트(세대명부 추출 프로그램)을 활용하여 세대 명부 출력 * 구에서 고령자 및 중·고등학교 입학예정자 추출하여 동 배부예정

※ **사실조사 대상**

- 무단전출 의심자(이해관계자 등 제3자 요청포함)
- 90세 이상 고령자(1925.12.31. 이전 출생자)
-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

○ **조사 방법 및 유의 사항**

- 사전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시행령 별지 제19호 서식을 이용하여 반드시 현장 방문조사 실시
 - ※ 사실조사원은 사실조사시 반드시 시행령 별지 제20호 서식의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여 불필요한 민원 예방
- 무단 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·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
 - ※ 연락 가능한 무단 전출자는 실제 거주지로 기간 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직권 거주불명등록될 수 있음을 안내
-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

- 미거주를 이유로 채권자 등 제3자가 의뢰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에 대해 사실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문서로 회신
- 60세 이상 고령자는 노인복지 부서와 협조하여 기초연금 등 수령 여부 사전 확인 후 사실조사 실시
 - ※ 고령자의 거주 여부 사실조사시 고령자 가족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념하여 사실조사
- 공부상 또는 명확한 자료 등에 의하여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고 후 사망 말소자로 직권 조치*하고, 사망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·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
 - ※ 이 경우에도, 사망자와 동일 세대원 또는 가족 등이 있음이 확인되면 가족 관계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를 우선 하도록 안내

○ **최고·공고 및 주소이전 안내**

-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 하는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토록 안내
- 최고장 발송(7일 이상) :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
- 기사판 공고(7일 이상) :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

3. 직권조치 : 2015.12.14. ~ 2015.12.18.(5일간)

-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,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
 - ※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되어 통지할 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 공고
 - ※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 : 영 제25호 서식 활용

4. 과태료 경감 : 2015.11.2. ~ 2015.12.18.(5일간)

○ 특별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, 제40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

- 다만,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

※ 단 기존 과태료 체납시에는 특별 사실조사기간 중에도 과태료 경감 미적용하고
자진납부에 따른 20%만 적용

<주민등록법>

제40조(과태료)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·제3항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,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주민등록법 시행규칙>

제21조(과태료) ③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아야 한다.
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

<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>

제2조의2(과태료 감경)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
2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·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5. 미성년자

※ 이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**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아야 함**

- **징수시 특별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%를 추가경감 가능**

<질서위반행위규제법>

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<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>

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.

※ 최초 과태료 납부고지 기한내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됨

IV 행정 사항

□ 자치행정과

- 홍보 현수막 제작·배부
 - 소요예산 : 총 1,760천원(80,000원 x 22개)
 - 예산과목 : 주민참여 및 자치역량 강화, 동 행정기능 유지 및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, 주민등록·인감업무 추진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
- 특별사실조사 추진상황 지도·점검
 - 점검일 : 2015. 12월 중
 - 점검자 : 동행정팀장 외 6명

구 분	A조	B조	C조
점검자	이은희, 이주현	오성희, 김일려	김정희, 백승재

- 주요점검사항 :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사항, 홍보·안내 사항

□ 동 주민센터

- 동별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
- 사실조사 결과 및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보고 : 2015.12.21(월)까지

붙임 1. 결과제출 서식 1부

2. 90세이상 인구통계자료. 끝.